

제330회 임시회
2014. 6. 20.(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6. 20.(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4년 6월 2일
- 회부일자 : 2014년 6월 5일

다. 상정일자 : 2014년 6월 11일

-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왕 규제개혁추진단장)

가.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신설·강화규제를 억제하고,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안 제2조)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안 제3조)
 - 당연직 위원 9명을 포함 20명 이내(위원장 : 행정부지사)
- 위촉위원 임기 : 2년, 한 차례만 연임(안 제4조)
-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규제신고센터 설치(안 제8조)
-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행정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 삭제(안 부칙)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최창국)

- 민간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여 이관하고, 규제의 중점방향을 규제의 등록·공표 중심에서 벗어나 규제 개선 및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기능 확보로 변경하였으며, 규제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우리도 규제정책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행정규제의 심사·조정 기능을 대행하고 있던 ‘도정조정위원회’와는 별도로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행정규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규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안전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충청북도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4. 기업,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장소 등 심의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된다.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규제개혁과 관련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추진단에 설치·운영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가목을 삭제한다.

관련법령 발췌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규제의 신설·강화,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2. 비용 발생 요인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여비 등 실비 지급 수요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9조(수당 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촉위원은 11명으로 구성, 매월 1회 1시간이내의 정기개최 할 경우(수시회의 제외)

나. 추계 결과 : 연 9,240천원(11명 × 70천원 × 12회)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14년)	2차년도 (‘15년)	3차년도 (‘16년)	4차년도 (‘17년)	5차년도 (‘18년)	계
참석수당	4,620	9,240	9,240	9,240	9,240	41,580

6. 작성자 :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왕